고리본부 및 사택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용 역 시 방 서

2026. 09.

한국수력원자력(주)

건 설 폐 기 물 운 반 처 리 시 방 서

1. 총 칙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 잔재 및 지구 내 불법매립된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리하여 처리하면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오염방지, 자원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 범위

1. 건축 .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 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한 부산물.

6.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

1.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 지침등 관계 규정에 따라 타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하며,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적정 처리업체를 통해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활용 처리시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재활용 처리 완료 후 처리량 및 처리업체 등 재활용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처를 해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7를 부착 또는 표기하

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6)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처를 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1. 지장물철거 전의 조치
 1) 도로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조서에 의기 철거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부지와 정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 상태 등을 파악하여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관하여 확인한 후 철거 준비토록 함.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류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

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 안 함.

2. 선 별

1) 지장물철거 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 선별함으로써, 지장물철거 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 함.

2) 집하장 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 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 외의 폐기물

2. 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상·하수도관의 파열·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보내야 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6. 6.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방법·시기(제10조제2항 관련)

1.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2.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라.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마.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

<청색>

1	중간·최종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⑯운반일자	년 월 일														
	⑰운반장소																	
중간·최종 처리자	⑱업 소 명		⑲사업자 등록번호				-			-								
	⑳사무실소재지																	
	㉑시설소재지																	
	㉒시 설 명		㉓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㉔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최종 처리자
㉕확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㉖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업소별 기재 항목
 가. 배출자는 ①부터 ⑱까지 및 ㉔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운반자로부터 ㉕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나. 운반자는 중간·최종 처리자로부터 ㉕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다. 중간·최종 처리자는 ⑲부터 ㉓까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㉕에 확인·서명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번호: 배출자별로 건설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나. ②·⑪ 및 ⑲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③업소명, ④소재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 및 건설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⑤건설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는 별표 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⑦위탁량: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 ⑨해당 건설폐기물을 중간·최종 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⑩업소명, ⑫소재지: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 ⑬차량종류: 차량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⑬부터 ⑰까지 운반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 ⑮수집·운반차량증 번호: 시·도지사가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타. ⑱업소명, ⑳사무실소재지, ㉑시설소재지, ㉒시설명: 중간·최종 처리자의 업소명, 중간·최종 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중간·최종 처리시설의 소재지, 처리시설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 ㉔처리방법: 처리방법란에는 "자가처리(재활용, 중간처리, 매립), 위탁처리(재활용, 중간처리, 매립)"와 같이 기재하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방법		분 류 번 호
자가처리	재활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분쇄[1005], 기타[1006]
	중간처리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매립시설[1201], 차단형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위탁처리	재활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분쇄[2005], 기타[2006]
	중간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소각[2117], 국가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2205], 국가매립시설[2206]

※ 비고: 국가소각은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 ㉕확인: 배출자, 운반자, 중간·최종 처리자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시 기재상황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하여야 합니다.
 거. ㉖검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고지사항
 - 이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

<노란색>

2	중간·최종 처리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⑯운반일자	년 월 일					
	⑰운반장소								
중간·최종 처리자	⑱업 소 명		⑲사업자등록번호		-		-		
	⑳사무실소재지								
	㉑시설소재지								
	㉒시 설 명		㉓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㉔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㉕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최종 처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㉖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

<녹색>

3	운반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⑯운반일자	년 월 일					
	⑰운반장소								
중간·최종 처리자	⑱업 소 명		⑲사업자등록번호		-		-		
	⑳사무실소재지								
	㉑시설소재지								
	㉒시 설 명		㉓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㉔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㉕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최종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㉖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

<분홍색>

4	배출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건설폐기물 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	고상=1, 액상=2																	
	⑨중간·최종 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⑯운반일자	년 월 일															
	⑰운반장소																		
중간·최종 처리자	⑱업 소 명		⑲사업자등록번호				-			-									
	⑳사무실소재지																		
	㉑시설소재지																		
	㉒시 설 명		㉓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㉔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㉕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간·최종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㉖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9)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 가동 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타처리 하여야 하며, 위탁처리 전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

가)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라)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 중 폐유 등은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2) 보관표지판 부착

가) 규 격 : 가로 60cm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 글씨

다) 부착장소 : 출입구

라) 내 용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보 관 기 관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 보 관 시 ○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	

3) 보관시설

가) 규모 : 3m × 4m (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나) 재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주위에 배수로 설치)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10) 물량산정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구 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지정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되, 일부 조정한 내용을 지구 현황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건설표준품셈 환경관리참조)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처리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2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3

10-1) 비용 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실사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술수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시설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10-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0-3) 외부반출비용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우선적으로 2020 창원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심사단가를 적용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재활용재의 지구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0-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지역주민이 사용을 원할시에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분류하여 적재하여 두워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단지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10-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지구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분석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지구외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시는 전량 소각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

기물협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전부 반영하며,

2) 사업구역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지구외로 반출처리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에는 2020 창원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심사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0-6) 공사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변경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사업구역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사업구역을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사업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2020 창원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심사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1)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11-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지장물철거 (목조,가타조) 동당

2) 지장물 철거 (연화벽돌,철근철골조) 동당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분류철거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철거면의 정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당 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 창고,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수 있는 물공량은 가옥 형태별 동수를 기준하여야 한다.

11-2. 폐기물 선별 (㎥/ton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 별로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1-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ton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후 혼합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1-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ton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1-5. 외부 반출 비용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 출 확 인 서 (송 장)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0000공사 지장물철거공사 ㅣ 위 치 : ㅣ 반 출 량 : ㅣ 차량번호 : ㅣ 반출일시 : ㅣ 현장대리인: ㊞ ㅣ 확 인 자 : ㊞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0000공사 지장물철거공사 ㅣ 위 치 : ㅣ 반 출 량 : ㅣ 차량번호 : ㅣ 반출일시 : ㅣ 현장대리인: ㊞ ㅣ 확 인 자 : ㊞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0000공사 지장물철거공사 ㅣ 위 치 : ㅣ 반 출 량 : ㅣ 차량번호 : ㅣ 반출일시 : ㅣ 현장대리인: ㊞ ㅣ 확 인 자 : ㊞

※특기사항

반출 폐기물량의 계량은 지정된 계량소에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반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일련번호	처리일시	처리량(㎥)	차량번호	발생위치	확 인 자		비 고
					성 명	날 인	

2. 용 역 적 용

1) 폐기물처리 업체와 철거업체는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멸실신고를 득한 후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운반 및 처리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운반, 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7) 기타사항

7-1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7-2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4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다.

7-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7-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